

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
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허창원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9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9년 6월 7일

3. 제정이유
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함.

4. 주요내용
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른 대행기관의 정의 규정 (안 제2조)
- 대행기관의 회의소집, 운영 지원, 기능수행사무 등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협조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규정(안 제4조, 제5조)

-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한 포상규정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- 금번 제정조례안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첫째, 안 제3조에서는 대행기관의 회의소집, 운영지원, 기능수행사무 등을 규정하였으며
 - 둘째, 안 제4조에서는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사무협조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정하였으며
 - 셋째, 안 제6조에서는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정하였음.
- 금번 제정조례안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,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